

제263회 임시회
2007. 9. 12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 제안 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7974호, 2006. 9. 22. 공포, 2007. 3. 23. 시행) 및 같은 법률 시행령(2007. 3. 23.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분리,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2조)

(1)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 의무화에 따라 배상금액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최저 한도액을 정함

(2)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 규정과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책무규정을 신설함.

나.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 신설(안 제2조의3)

(1)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인원 기준을 1제곱미터당 1.2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0.8인 이하로 하고, 좌석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함.

(3)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실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음.

(4)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 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을 정함.

(5)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신설(안 제2조의4)

(1)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안 제2조의5)

(1)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주로 재수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 있고, 재학생까지 교습을 허용할 경우, 고액수강료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학생의 교습을 제한함

(2)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난립

방지와 수강생의 안전·위생·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비 등의 등록 기준 설정(안 별표3)

(3)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한 건물 또는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생활지도담당인력 1인 이상(남, 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토록 하고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 함.

마.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안 제2조의6)

(1)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안 제4조)

(1) 법 제16조제2항에의거 교습시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현재 23:00에서 24:00까지로 완화함.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원 운영자의 책무규정을 비롯한 학원 시설의 기준,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설정 및 제한, 그리고, 교습시간 조정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수강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각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 시설의 기준과 설정에 대한 근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현황,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 기준의 근거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2항³⁾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단체들의 의견 수렴여부, 타 시도의 교습시간 추진현황,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0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각 시도의회 및 교육청에 요청한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에 한해 24:00시 까지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여야 한다. <신설 2006.9.22>